

## 1. 개정이유

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(義死傷者) 등에 대한  
가점 부여 시 응시생이 제출해야 하는 응시서류 추가 및 경장 시험승진  
제도 폐지에 따른 경장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삭제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 등 가점 부여 규정 신설에 따라 응시생이  
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‘의사상자 증명서’를 추가함(안 제27조)
- 나. 경장 승진시험 제도 폐지('25.11.1.)에 따라 경장 승진시험 과목(형소법  
등 3개 과목) 및 과목별 배점 비율을 삭제함(안 별표 13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    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(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제2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(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별표 13의 해당 란을 삭제하고,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해양경찰실무(Ⅱ)는 관리운영으로, 해양경찰실무(Ⅲ)는 경비안전으로, 해양경찰실무(Ⅳ)는 수사정보로 한다.

(단위: %)

| 경과별<br>계급별 | 해양·수사·정보통신·특임경과 |       | 항공경과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시험 과목           | 배점 비율 | 시험 과목 | 배점 비율 |

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
| 경 정 | 제1차 시험            | 행정법 | 30 | 행정법          | 30 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국제법 | 30 | 국제법          | 30 |
|     | 제2차 시험            | 행정학 | 40 | 행정학          | 40 |
| 경 감 | 행정학               |     | 35 | 행정학          | 35 |
|     | 해양법(해사법규 포함)      |     | 35 | 해양법(해사법규 포함) | 35 |
|     | 해양경찰 실무(Ⅱ, Ⅲ, Ⅳ)  |     | 30 | 항공법규         | 30 |
| 경 위 | 형법                |     | 35 | 형법           | 35 |
|     | 형사소송법             |     | 35 | 형사소송법        | 35 |
|     | 해양경찰실무(Ⅱ, Ⅲ, Ⅳ) 중 |     | 30 | 항공법규         | 30 |
|     | 2과목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
| 경 사 | 형법                |     | 35 | 형법           | 35 |
|     | 해사법규              |     | 35 | 해사법규         | 35 |
|     | 해양경찰실무(Ⅱ, Ⅲ, Ⅳ) 중 |     | 30 | 항공법규         | 30 |
|     | 1과목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

#### 비고

1. 해양경찰실무(Ⅱ)는 관리운영으로, 해양경찰실무(Ⅲ)는 경비안전으로, 해양경찰실무(Ⅳ)는 수사정보로 한다.
2. 행정학은 기초이론, 정책론, 조직론 및 인사·재무·환류행정으로 한다.
3.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.
4. 해사법규는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(防除)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.
5. 항공법규는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 및 그 하위법령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| 정 |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제27조(응시서류의 제출 등) ① | 제27조(응시서류의 제출 등) ① - |   |   |   |
|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개경쟁채용시험(이하 “공개경 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쟁채용시험”이라 한다)에 응시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정하는 응시원서(전자문서로 된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원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시권자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하며, 영 제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시험(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 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한다)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   | -----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 1. ~ 6. (생략)     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|   |   |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|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 |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     |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      |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| 명서(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      |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|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 1통     |   |   |   |
|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| ② -----              |   |   |   |

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## <신 설>

③ · ④ (생략)

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, each set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paper is otherwise empty,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(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 1통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(제67조 관련)

(단위: %)

| 경과별<br>계급별 | 해양·수사·정보통신·특임경과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항공경과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시험 과목                |     | 배점<br>비율      | 시험 과목            | 배점<br>비율      |
| 경정         | 제1차 시험               | 행정법 | 30            | 행정법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국제법 | 30            | 국제법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제2차 시험               | 행정학 | 40            | 행정학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|
| 경감         | 행정학         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| 행정학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해양법(해사법규 포함)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| 해양법(해사법규 포함)     | 35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해양경찰 실무(Ⅱ, Ⅲ, Ⅳ)     |     | 30            | 항공법규             | 30            |
| 경위         | 형법          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| 형법 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형사소송법       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| 형사소송법            | 35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해양경찰실무(Ⅱ, Ⅲ, Ⅳ)      |     | 30            | 항공법규             | 30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중 2과목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경사         | 형법          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| 형법 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해사법규        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| 해사법규             | 35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해양경찰실무(Ⅱ, Ⅲ, Ⅳ)      |     | 30            | 항공법규             | 30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중 1과목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경장         | <del>형사소송법</del>     |     | <del>35</del> | <del>형사소송법</del> | <del>35</del> |
|            | <del>해사법규</del>      |     | <del>35</del> | <del>해사법규</del>  | <del>35</del> |
|            | <del>해양경찰실무(Ⅰ)</del> |     | <del>30</del> | <del>항공법규</del>  | <del>30</del> |

비고

1. 해양경찰실무(Ⅱ)는 관리운영으로, 해양경찰실무(Ⅲ)는 경비안전으로, 해양경찰실무(Ⅳ)는 수사정보로 한다.
2. 행정학은 기초이론, 정책론, 조직론 및 인사·재무·환류행정으로 한다.
3.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.
4. 해사법규는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(防除)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.
5. 항공법규는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 및 그 하위 법령으로 한다.